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34707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347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소19623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권영균

피고, 항소인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박종훈, 이윤용

변론 종결2024. 8. 16.

판결 선고2024. 11. 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소196235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34,984원과 그 중 15,556,165원에 대하여 2022. 8. 5.부터 2024. 11.

8.까지는 연 3.626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57,529원과 그 중 15,556,165원에 대하여 2022.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39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15,556,165원에 대하여 2022.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39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경기도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6. 19.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의뢰에 따라 피보증인 소외 회사,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24. 6. 19., 대출과목 기타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2,000만 원, 부분보증비율 100%로 기재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원,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보증특약'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1. 본 보증은 귀행과의 「법인기업주 연대보증 면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한 연대보증 면제 보증임.
2. 본 보증서는 귀 행과의 "최저임금보장 경영애로기업 및 위기지역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임.
3. 본 보증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임.
4.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이 소진되어 채무자와의 협의 하에 운행자금으로 대출취급하게 되는 경우, 보증서 앞면의 대출과목과 보증기한 또는 특약 중 상환방법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조건변경 절차를 생략하고 채권기관지금 대출과목과 보증기한(당초 보증기한 이내에서만 가능) 및 상환방법으로 대출 취급할 수 있음.(다만, 거치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5. 본 보증서는 24개월거치 3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취급하실 것(상환주기 3개월, 만기 원금상환비율 30%). 끝.

다. 원고는 2019. 6. 19.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소외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실행하였다.

운전	2,000만원	2024. 6. 19.	변동금리 [금융채 + 2.889%], 변동주기 6개월	이자율에 연체가산금 3%를 더하여 결정, 최고 연 15%	원금분할 상환
----	---------	--------------	----------------------------------	------------------------------------	------------

라. 소외 회사는 2020. 9. 21.부터 분할상환하기로 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1. 1. 1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증특약 제2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 2. 9. '최저임금보장 경영애로기업 및 위기지역 금융지원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대출금리) ① 본 협약에 의한 보증부여신의 금리는 아래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3개월 단위 변동금리 적용)

2. 원금분할상환대출의 금리: 대출실행일 현재 CD(91일)에 1.65% 이내의 가산금리 적용

바.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신용보증약관]

제3조 용어의 정의

2. '신용보증조건'은 신용보증서에서 명시한 채권자, 피보증인(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방법, 대출과목, 보증비율 및 보증특약을 의미합니다.

제5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관계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1.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

제10조 신용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신용보증사고라 함은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채권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 내에 재단에게 도달되도록 반드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용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1	보증부대출의 원금(분할상환원금 포함)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약정기일의 익일	사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	----------	-------------------

제21조 보증특약의 운용

① 보증특약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채권자는 대출실행, 담보취득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증특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22조 면책

① 재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한 때

7. 제10조(신용보증사고 및 통지기한)의 통지기한까지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아니함으로써 재단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

② 제1항의 세부내용 및 면책범위에 대하여는 재단이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합니다.

사. 피고가 이 사건 약관 제22조에 따라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이하 '이 사건 면책기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하였을 때가. 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 위반○ 채권자 영업점, 채무자, 보증부 대출과목이 다른 경우○ 개별보증의 경우 보증기한보다 보증부대출기한이 장기인 경우로서 보증기한 경과 후 약관 제10조에 의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단책임분담금액 전액 (종속채무도 면책)
다. 위 "시설자금보증 관련 보증특약"이외의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1) 보증특약에서 한정된 신용보증대상채무가 아닌 때(2) 보증특약에서 제한한 보증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때	신용보증대상채무가 아닌 대출금에 보증비용을 곱한 금액 및 종속채무보증책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서 정한 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인데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원리금 합계 16,757,529원(= 원금 15,556,165원 + 1,201,364원(2020. 8. 19.부터 2022. 8. 3.까지의 이자)) 및 그 중 원금 15,556,165원에 대한

2022. 8. 5.부터 약정이율(연 5.398%)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1)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증특약 제3조에는 중소기업부 지원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전자금에 대한 보증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위반하여 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는 이 사건 약관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피고의 보증채무는 전부 면책되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에도 1개월이 지나서야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약관 제22조 제1항 제7호의 '통지기한까지 신용보증사고발생 통지를 아니함으로써 재단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3) 이 사건 보증특약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협약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출 금리와 다르게 이 사건 대출의 이자율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약관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증채무는 전부 면책되었다.

3. 판단

가. 보증특약 제3조 위반 여부

1)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는 중소기업부 지원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전자금에 대한 보증이라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대출의 여신과목에 '운전'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중소기업부 정책자금이 소진되어 위 정책자금이 아닌 은행자금으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보증특약 제4조에는 중소기업부 정책자금이 소진되어 은행자금으로 대출하더라도 채권기관자금 대출과목과 보증기한 및 상환방법으로 대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율만 이 사건 업무특약과 달리 정했을 뿐 나머지 조건은 모두 이 사건 신용보증서 기재와 동일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이 이 사건 보증특약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 여부

1) 이 사건 약관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체가 2020. 9. 21. 시작되었음에도 원고는 2021. 1. 13.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약관 제22조 제1항 제7호에는 "제10조(신용보증사고 및 통지기한)의 통지기한까지 신용보증사고발생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단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말미암아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업무특약에 따른 금리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 여부

1) 이 사건 약관(을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을 한 경우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고(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신용보증조건'이란 신용보증서에서 명시한 채권자, 피보증인,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방법, 대출과목, 보증비율 및 보증특약을 의미하며(약관 제3조 제2호), 이 사건 약관은 보증특약이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약관 제21조), 원고가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한 경우에는 피고가 면책기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받는다(약관 제22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특약 중 신용보증의 성립조건이 아닌 부분을 다소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성립하며, 피고의 보증채무에 관한 이 사건 면책기준에 따른 면책이 문제될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협약 제8조 제1항 제2호에는 원금분할상환대출에 대한 금리는 대출실행일 현재 CD(양도성 예금증서, 91일)에 1.65% 이내의 가산금리를 적용한 이자율을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자율을 금융채 + 2.889%(6개월 변동금리)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보증대상으로 정한 대출과 이 사건 대출은 채권자, 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상환방법(원금균등분할상환)이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는 대출과목이 '기타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대출의 여신과목으로 '운전'(운전자금대출을 줄여서 쓴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전자금대출은 기타자금대출에 해당하는 점, ③ 이자율이 다소 차이난다고 하여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위험이나 피고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율의 차이 여부가 이 사건 면책기준 제1항 가.목에서 열거한 항목들(채권자 영업점, 채무자, 보증부 대출과목)처럼 보증대상인 대출의 동일성 여부를 특징짓거나 피고가 전체 면책되어야 할 정도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특약에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의 이자율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보증책임을 전부 면책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이 사건 면책기준 제1항 다.목 (2)에서는 보증특약에서 제한한 보증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책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면책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보증채무 청구액 중 이 사건 업무특약이 정하는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상당액 부분은 이 사건 면책기준 제1항 다.목 (2)에 따라 면책될 수 있고, 그 액수는 다음 표2)와 같다.

15,712,858	2020. 8. 19. - 2020. 12. 31.	연 3.578%207,371	연2.3033%133,858
2021. 1. 1. - 2021. 1. 17.	연3.572%26,141	연2.31%16,905	
15,556,165	2021. 1. 18. - 2021. 6. 18.	연3.572%231,400	연2.32%150,293
2021. 6. 19. - 2021. 12. 18.	연3.641%283,975	연2.31%180,165	
15,556,165	2021. 12. 19. - 2022. 6. 18.	연4.469%346,650	연2.92%226,497
2022. 6. 19. - 2022. 8. 3.	연5.398%105,827	연3.6267%71,101	
합계	1,201,364	778,819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의 원금 및 2022. 8. 3.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16,334,984원(= 15,556,165원 + 778,819원)과 그 중 원금 15,556,165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8.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8.까지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연 3.626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임은하

판사김용두

판사최성수

1) 원고는 소장에 지연배상률을 연 12%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연배상금률은 이자율에 3%를 더하여 결정된다),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하는 비율이라고 해석한다.

2) 기간식으로 계산하는 방식

[01] $15,712,858 \times [135/365, (=2020.08.19.부터 2020.12.31.까지)] \times 2.3033\% = 133,858$

[02] $15,712,858 \times [17/365, (=2021.01.01.부터 2021.01.17.까지)] \times 2.31\% = 16,905$

[03] $15,556,165 \times [152/365, (=2021.01.18.부터 2021.06.18.까지)] \times 2.32\% = 150,293$

[04] $15,556,165 \times [183/365, (=2021.06.19.부터 2021.12.18.까지)] \times 2.31\% = 180,165$

[05] $15,556,165 \times [182/365, (=2021.12.19.부터 2022.06.18.까지)] \times 2.92\% = 226,497$

[06] $15,556,165 \times [46/365, (=2022.06.19.부터 2022.08.03.까지)] \times 3.6267\% = 71,101$